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912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5881호)	조경태의원	2024.11.26.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02.19.) 상정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13989호)	김선교의원	2025.11.0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2.12.)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3.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23.)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아울러, 현행법상 예선 및 예선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이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고 및 수리가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예선 및 예선업 등록의 규정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함(안 제2조 및 제24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무역항”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 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으로서 무역항 출입에 관한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당 선박의 입항 사실을 확인·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 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수리가 된 것으로 보며, 관계기관의 장은 관리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무역항”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중 “무역항”을 각각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선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예선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예선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예선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나, 그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예선업을 영위할 수 없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u>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u></p> <p>5. ~ 13. (생략)</p> <p>제4조(출입 신고) ① · ②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 ----- ----- ----- -----.</p> <p>5. ~ 13. (현행과 같음)</p> <p>제4조(출입 신고)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고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u></p>

박으로서 무역항 출입에 관한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당 선박의 입항 사실을 확인·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 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수리가 된 것으로 보며, 관계기관의 장은 관리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② (현행과 같음)

③ -----

<p>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 하게 할 수 있다.</p> <p>1. 1개의 <u>무역항</u>에 출입하는 선 박의 수가 적은 경우</p> <p>2. 2개 이상의 <u>무역항</u>이 인접한 경우</p> <p>④ · ⑤ (생략)</p>	<p>----- -----.</p> <p>1. -----<u>무역항의 수상구역등</u> ----- -----</p> <p>2. -----<u>무역항의 수상구 역등</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	---